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1. () 1 (:61086)

2. 가 , , , 가 ,

3. , , , 가 ,

4.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5. ()

1.	* :CS x90%+KBP x10% ((www.wcsam.com) 가 .)
2.	- 60% - 40% - 가가 , 가 70%±30%
3.	「 」 가 ,
4.	- 5 , 2 가 가
5. 가	- () . 가 - (www.wcsam.com) 가

6. (:2008 11 30)

	39	13 ()	8,915 ()	- /Tuck School of Business (MBA,) - Global

* Global ,
* 가 :

7. ()

(단위:%,기하평균연환산)

구분	최근1년 2007.11.27 ~2008.11.26	최근2년 2006.11.27 ~2008.11.26	설정일 이후 2006.10.16 ~2008.11.26
투자신탁	-43.98	-13.18	-11.59
Class A	-45.21	-14.94	-13.38
Class C1	-45.73	-15.69	-14.14
Class C2	-45.61		-42.15
Class C-e	-45.51	-15.38	-13.86
Class C-W	-44.67	-14.15	-12.84
Class C-H	-45.61		-36.4
비교지수	-48.41	-17.21	-15.53

* Class C2, Class C-e, Class C-W, Class C-H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은 각각의 클래스 설정일인 2006.10.5, 2006.10.18, 2006.10.30, 2007.9.17부터 기준일인 2008.11.26까지의 연환산 수익률입니다.
* 비교지수산출방법: CS천연자원지수 90% + Call 10%



(8-12)

		(,%)							
		A1	C1	C2	C3	C4	Ce	C-W	CH
			10	10 50	50 100	100	가	Wtap	가
1)		1%							
30		70%							
30 90		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9%	1.75%	1.55%	1.35%	0.09%	1.40%	0.0%	1.575%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2.01%	2.86%	2.66%	2.46%	1.20%	2.51%	1.11%	2.685%
		0.61%	0.61%	0.61%	0.61%	0.61%	0.61%	0.61%	0.61%
, 2)		2.62%	3.47%	3.27%	3.07%	1.81%	3.12%	1.72%	3.295%

1) 가 ,
 2) 가 ,
 2 (2008.1. 15.4%, 14.0%) (, , 가 ,)
 가 , (, 가)
 2009 12 31 ,)
 3. (9 30 ~ 4 30)
 가 ,

5		5	
- 가 (D) (D+1)	- 가 (D) 3 (D+2)	- 가 (D) 4 (D+3)	- 가 (D) 5 (D+4)
D (5) D+1 (D+1 가)	D (5) D+2 (D+2 가)	D (5) D+2 D+3 D+7 (5) 가	D (5) D+1 D+4 D+7 (5) 가

() (1332) ()

' ()'
 () () (/) () ()
 () / ()

< 본 문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우리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투자신탁 제1호(펀드코드: 61086)**

2. 펀드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공모형, 추가형, 종류형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수익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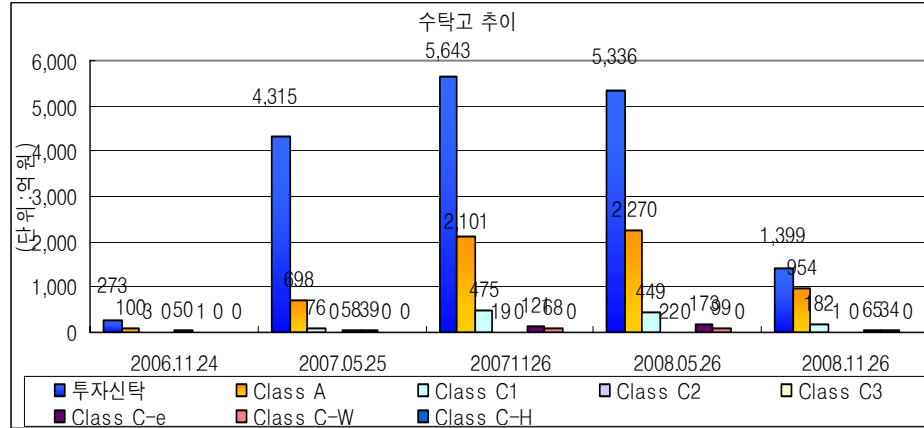
Class 구분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납입금액에 관계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간접 투자기구에서 매입한 경우
Class C-H 수익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클래스간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 자산운용회사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
 ※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이고,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는 2006년 9월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Sub-Management Agreement)에 의거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전세계의 천연자원관련 주식)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입니다.

5. 최초설정일 및 **2006.10.16.** 우리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투자신탁 제1호 설정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등에 중장기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해외 주식형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CS 천연자원 지수 x 90% + KBP 콜지수 x 10%

(비교지수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홈페이지(www.wcsam.com)에서 확인가능)

*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펀드 세부운용전략의 변경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1) 자산운용 기본전략

- 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한 전망 및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여러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 주식 등에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한국 및 외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 **신탁재산의 60%이상:**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 등에 투자

- **신탁재산의 40%이하:** 한국 및 외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 환헤지: 환율변동위험에 대비하여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인 경우, 주요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환헤지 수준 유지

-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

회사”)이고, 외국통화표시자산(전세계의 천연자원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2006.9]에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London) Limited 자산운용회사가 담당합니다.

(2)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 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전략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으로 상기 목표환헤지 수준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목표환헤지 수준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외국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투자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포함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 **환율변동위험**: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와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으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투명성 위험**: 해외자산 등의 경우 매매의 방식등도 국내기준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 **유동성 위험**

사 **파생상품 투자위험**

아. **기타 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전세계 천연자원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편인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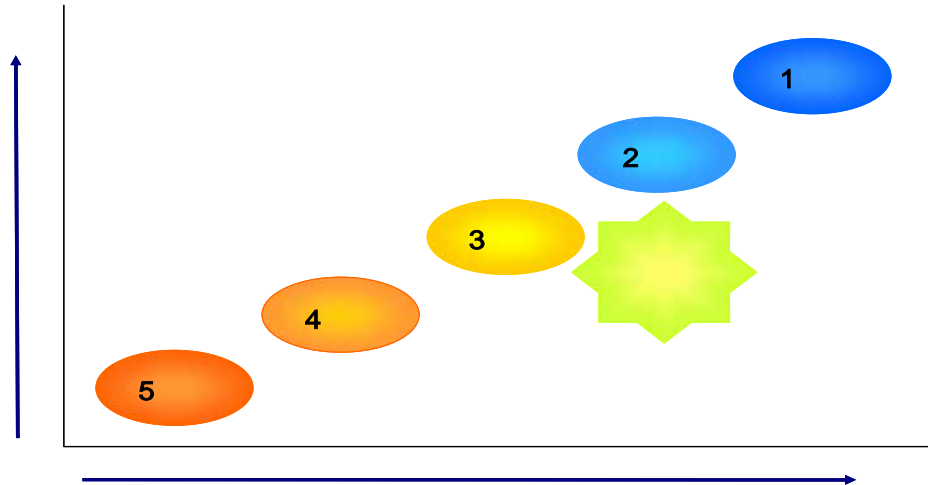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천연자원관련 경제여건 변화와 전세계 천연자원 관련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전세계 천연자원과 관련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의 적정 비율을 선택함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매우높음
- 2등급: 높음
- 3등급: 중간
- 4등급: 낮음
- 5등급: 매우낮음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펀드의 투자위험 등급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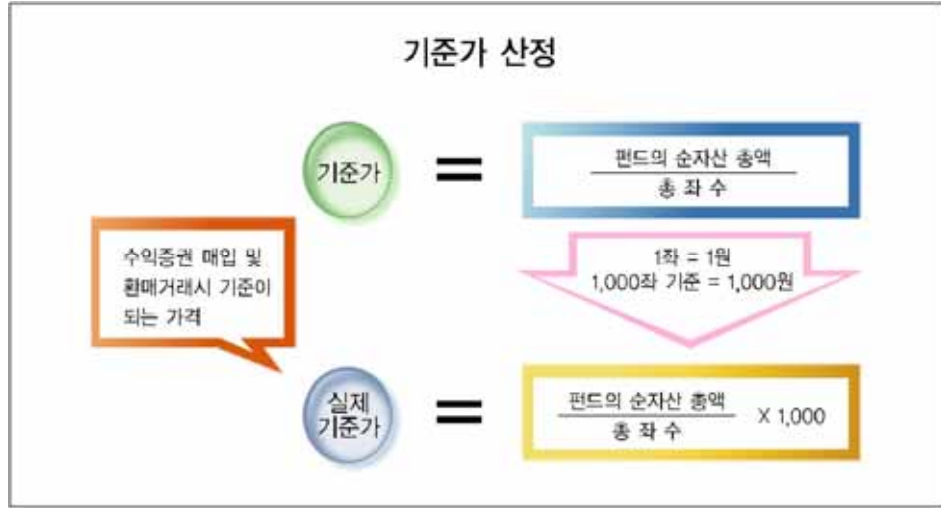
구분	위험평가 점수	해당 펀드(예시)
Level 1	20 점 미만	이머징 주식/채권투자, 부동산 개발형/임대형 우리크레디트스위스 Eastern Europe 주식투자신탁 제 1 호
Level 2	20 점 이상	주식형(성장형), 주식혼합형(비적격채권), 주식인덱스형 프런티어 우량주 주식투자신탁 제 1 호/우리 KRX100 주식투자신탁 제 1 호
Level 3	40 점 이상	주식혼합형(적격채권), 채권혼합형(회사채이상), ELF(일반형), 부동산 PF 형 프런티어 배당주 혼합투자신탁 제 1 호
Level 4	60 점 이상	채권형(비적격채권), 채권혼합형(국공채이상), ELF(원금보존추구형) 프런티어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Level 5	80 점 이상	MMF, 채권형(적격채권), 국제 우량채권형(국제신용평가등급 A 이상) 우리 Frontier 채권투자신탁 제 1 호/프런티어 국공채 MMF 제 1 호(개인)

※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가장 위험이 높아 위험평가점수가 낮은 Level 1에서 위험평가점수가 높은 Level 5까지 5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http://www.wcsam.com)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08년11월30일)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간접투자기 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김영준	39	팀장	13개(팀공동)	8.915억 (팀공동)	- 고려대 무역학과/Tuck School of Business (MBA, 다트머스대학) - 현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Global 운용팀

* Global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투자일임계약 운용규모: 없음

[위탁운용 펀드매니저 소개]

성명	소속부서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Neil Gregson	이머징 마켓주식팀	- 영국 Nottingham Univ.철광산 엔지니어 전공 - 남아프리카공화국 철광산 엔지니어 -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산운용사에서 금광 및 원자재 펀드 운용 - Credit Suisse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주식 최고책임자 - Credit Suisse 자산운용 부문 Emerging Market 주식 최고 책임자

* 상기 운용자는 해외자산운용을 운용한 위탁운용사의 펀드매니저로서 본 펀드의 공식적인 운용사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입니다. 위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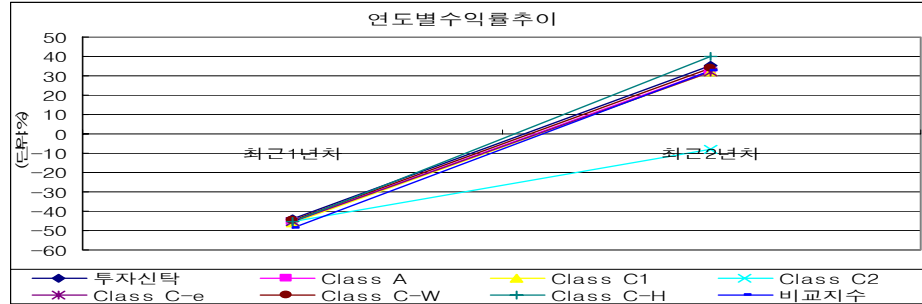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구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2007.11.27 ~2008.11.26	2006.11.27 ~2007.11.26
투자신탁	-43.98	35.39
Class A	-45.21	32.87
Class C1	-45.73	31.79
Class C2	-45.61	-7.93
Class C-e	-45.51	32.23
Class C-W	-44.67	34
Class C-H	-45.61	39.76
비교지수	-48.41	32.96

* Class A, Class C1의 설정일은 2006.10.16이며, Class C2, Class C-e, Class C-W, Class C-H의 설정일은 각각 2006.10.5, 2006.10.18, 2006.10.30, 2007.9.17입니다.
* 비교지수산출방법: CS천연자원지수 90% + Call 10%



*위에 표시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으로 향후 미래의 운용실적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펀드 세부운용전략의 변경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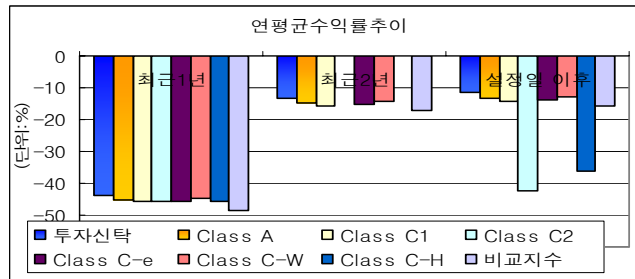
2)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하평균연환산)

구분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 이후
	2007.11.27 ~2008.11.26	2006.11.27 ~2008.11.26	2006.10.16 ~2008.11.26
투자신탁	-43.98	-13.18	-11.59
Class A	-45.21	-14.94	-13.38
Class C1	-45.73	-15.69	-14.14
Class C2	-45.61		-42.15
Class C-e	-45.51	-15.38	-13.86
Class C-W	-44.67	-14.15	-12.84
Class C-H	-45.61		-36.4
비교지수	-48.41	-17.21	-15.53

* Class C2, Class C-e, Class C-W, Class C-H 설정일 이후의 수익률은 각각의 클래스 설정일인 2006.10.5, 2006.10.18, 2006.10.30, 2007.9.17부터 기준일인 2008.11.26까지의 연환산 수익률입니다.

* 비교지수산출방법: CS천연자원지수 90% + Call 10%



*위에 표시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으로 향후 미래의 운용실적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펀드 세부운용전략의 변경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합니다.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 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비용	선취 판매수수료	Class A1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
	후취 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Class C1, C2, C3, C4, C-e, C-W 및 C-H: 1.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기타	-	-
	합계	Class A1 : 선취 판매수수료 Class C1, C2, C3, C4, C-e, C-W, 및 C-H : 환매수수료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 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	3개월 단위 사유발생시 지출
	판매회사 보수	①Class A1 수익증권: 연 0.9% ②Class C1 수익증권: 연 1.75% ③Class C2 수익증권: 연 1.55% ④Class C3 수익증권: 연 1.35% ⑤Class C4 수익증권: 연 0.09% ⑥Class C-e 수익증권: 연 1.4% ⑦Class C-W 수익증권: 연 0.0% ⑧Class C-H 수익증권: 연 1.575%	
	수탁회사 보수	연 0.08%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3%	
	기타비용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등 (연 0.61%)	
	총 보수·비용비율	①Class A1 수익증권: 연 2.62% ②Class C1 수익증권: 연 3.47% ③Class C2 수익증권: 연 3.27% ④Class C3 수익증권: 연 3.07% ⑤Class C4 수익증권: 연 1.81% ⑥Class C-e 수익증권: 연 3.12% ⑦Class C-W 수익증권: 연 1.72% ⑧Class C-H 수익증권: 연 3.295%	기타비용 포함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예상치임.

※ 기타비용(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비용)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기타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한다.

가.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특정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수익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Class 구분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납입금액에 관계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간접 투자기구에서 매입한 경우
Class C-H 수익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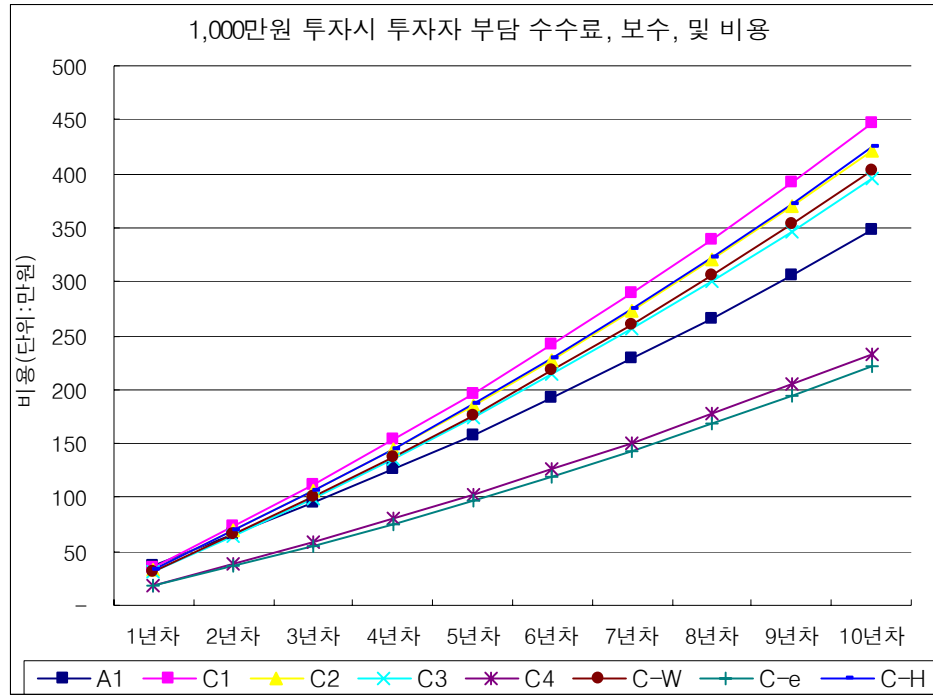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클래스간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만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1 수익증권	37	95	158	348
Class C1 수익증권	36	112	197	447
Class C2 수익증권	34	106	185	422
Class C3 수익증권	31	99	174	396
Class C4 수익증권	19	58	103	233
Class C-e 수익증권	32	101	177	402
Class C-W 수익증권	18	56	97	222
Class C-H 수익증권	34	106	187	42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 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율 0%,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배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과세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혜택(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인 Class C-H 가입자에 한함)

이 투자신탁의 **Class C-H 수익증권**은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질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1) 가입자격

가입대상	가 18 가
	① _____ ② _____ (" ") 가 _____ 「 _____ , 99 1 _____ 가가 3 _____ _____ 가 _____ 가 _____
세제혜택	7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5년 이상 가입 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연도 불입금액의 40%(한도)를 소득공제 (단, 소득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2항 2조의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이하임)
비과세혜택 가입시한	2009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수익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 부여 (기간변경)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이내 (단,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합계금액 기준)

*참고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2항 2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세제혜택 및 법정 해지요건

이자소득 비과세	<p>1) 저축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가 없는 경우</p> <p>2) 2009. 12. 31 까지 가입자에 해당됨</p> <p>※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p> <p>*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2008.1.1이후 주택취득자에 한함)
근로소득 공제	<p>공제대상 :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p> <p>* 세액 추징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납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8%,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징수 단, 저축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 추징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법정 해지요건	<p>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시 법정해지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된 구입한 주택(기준시가 3억원 미만)이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경우는 세제 혜택 이 가능하나 가입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제외 -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투자신탁을 이용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저축대상: 금융실명법상 증권투자신탁법상 위탁회사(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저축 등

○ 통장표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

○ 가입대상: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함)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 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③ 다만, 세대주가 무주택자일지라도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시 가입이 불가능

○ 불입금액: 분기당 300만원 이내

○ 계약기간: 7년 이상

○ 계약유지: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과세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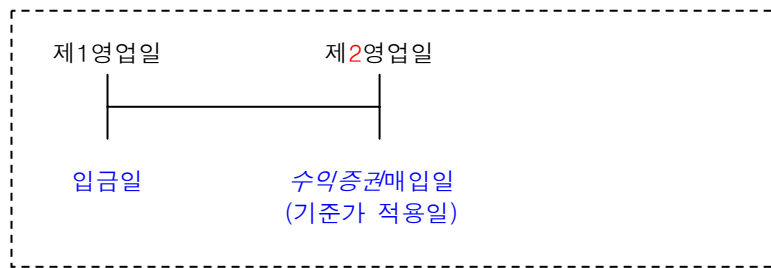
2) 판매가격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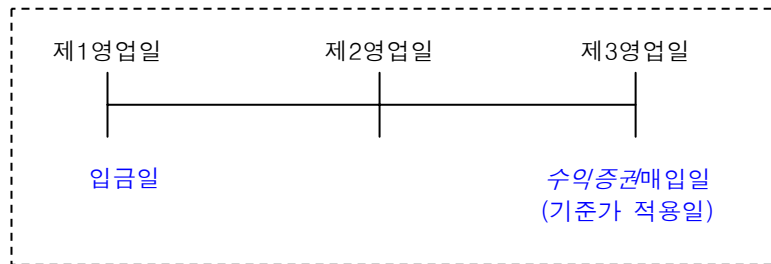
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주2)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가입자격 및 세제 혜택등

①이 투자신탁의 C-H 종류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에 한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C-H 종류의 수익자는 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환매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환매의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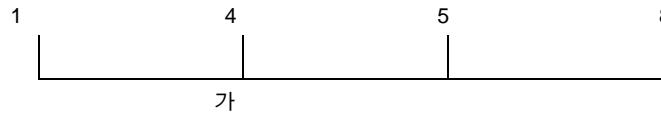
- ①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⑤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⑥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약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②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③ 판매회사(약관 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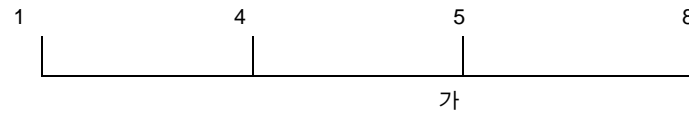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일>

(1) 수익자가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8영업일**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가 17시[오후5시] 이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8영업일**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Class C1, C2, C3, C4, C-e, C-W 및 C-H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1) 분배금등의 지급

-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발행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① 수익자는 현금으로 분배된 이익분배금에 대한 특정 약정이 없는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C-H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한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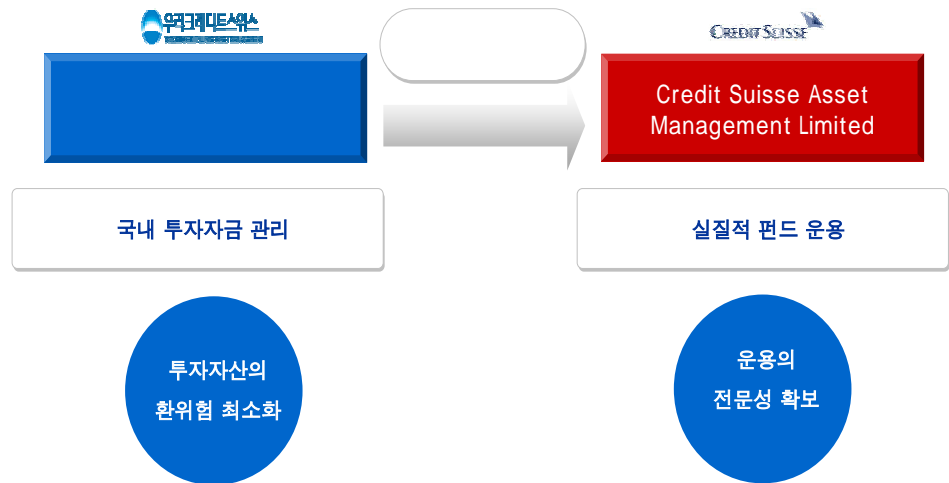
1.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 개요

(1) 자산운용 기본전략

- 주로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운용방침입니다. 그러나 운용 전략이나 환경의 변화에 각 자산 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내외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간접투자 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자산의 운용업무 등을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에 위탁중이며, 동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업무위탁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 펀드 편입 상위 10개 종목 및 산업별 투자비중 현황(2008.10.31 현재)

섹터별	비중	종목명	국적	섹터
금속과 채광	45.9 %	BHP BILLITON PLC(GBP)	영국	금속과 채광
석유,가스,소모연료	27.8 %	RIO TINTO PLC(GBP)	영국	금속과 채광
종이와 임산물	12.9 %	INTERNATIONAL PAPER CO(USD)	미국	종이와 임산물
화학	10.8 %	ANGLO AMERICAN PLC	영국	금속과 채광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2.17 %	ROYAL DUTCH SHELL PLC-B SHS	네덜란드	석유, 가스, 소모연료
독립전력생산/에너지 거래	0.46 %	EXXON MOBIL CORP(USD)	미국	석유, 가스, 소모연료
		UPM-KYMMENE OYJ	핀란드	종이와 임산물
		LINDE AG	독일	화학
		FREEPORT MCMORAN COPPER-B	미국	금속과 채광
		PETROLEO BRASILEIRO SA(USD)	브라질	석유, 가스, 소모연료

(2) 환위험 관리 전략

-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주가가격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헷지 비용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 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

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전략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으로 상기 목표환헤지 수준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목표환헤지 수준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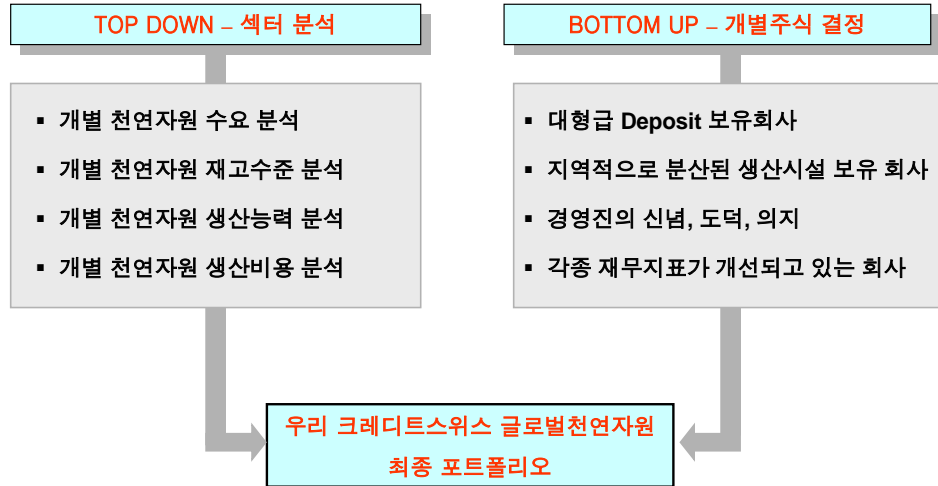
따라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투자전략

① 투자 Style



② 투자 Process



2. 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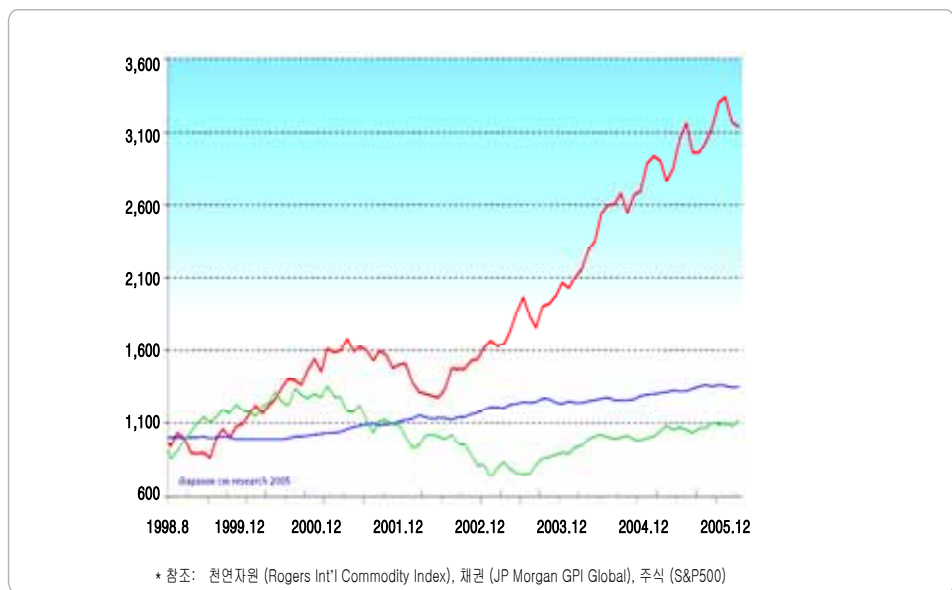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p>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투자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특히,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환율변동위험	<p>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p>또한, 이 투자신탁은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와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으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위험	해외자산 등의 경우 매매의 방식등도 국내기준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p>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또한, 펀드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기타 위험	<p>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지급일의 순자산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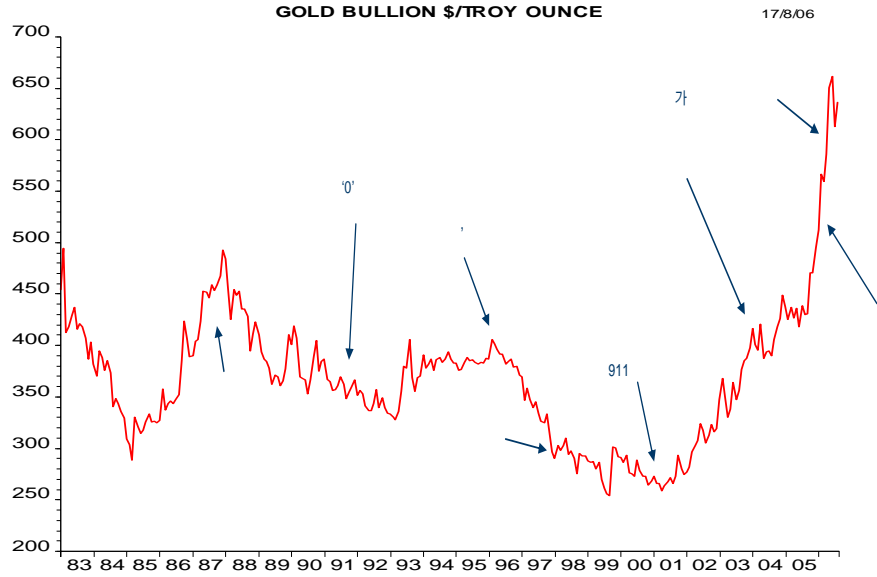
2) 주요 투자시장 현황

(1) 최근 5년간 천연자원, 주식, 채권 수익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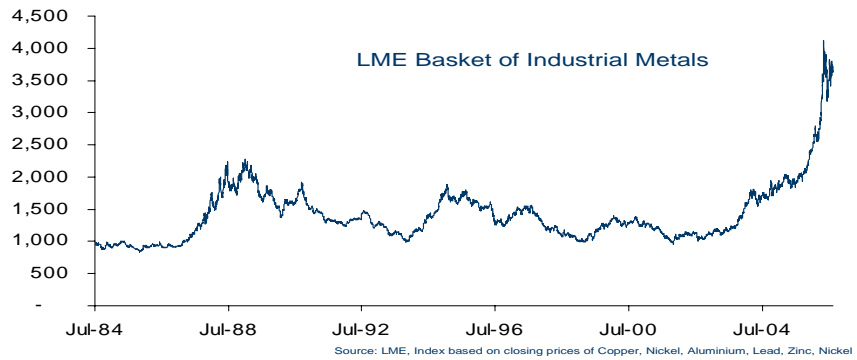
(2) 주요 천연자원 가격추세

-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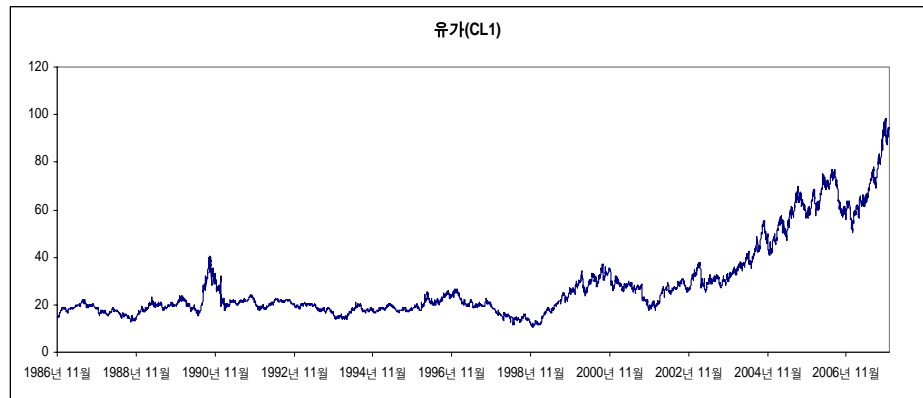
Source: DATASTREAM

- 비(卑) 금속



Source: LME, Index based on closing prices of Copper, Nickel, Aluminium, Lead, Zinc, Nickel

- 유가



3. 투자대상

*투자비율은 신
탁 재산 총액에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 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등사(주권상장법상) 또는 비공개상

대비하여 산출

		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및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이하 "주식"이라 합니다)
②외국주식		법 제2조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식예탁증서 및 신주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제1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식"이라 합니다) 주로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외국주식(이하 "글로벌천연자원 관련 주식"이라 합니다)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③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④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⑤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⑥금리스왑거래	100%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⑦수익증권 등	5%이하 (단, ETF는 30%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합니다.)
⑧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⑨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15%이하 (위탁증거금)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법 시행령 제 8 조에 의거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 장내 파생상품 "이라 합니다) -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파생상품 중 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법 시행령 제 9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거래 중 거래의 결과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한 거래(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이하 " 장외 파생상품 "이라 합니다.)
⑩환매조건부 채권매도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합니다.
⑪은행계정대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⑫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위의 ①~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p>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및 수익자에 관한 사항	<p>* 이해관계인이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함.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p>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 37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38 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 월간은 약관 제 37 조제 1 항제 8 호, 제 38 조 제 1 항제 2 호 본문 및 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외국통화표시 상장주식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②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비상장채권(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자산유동화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⑦장외파생상품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증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⑩외국간접투자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⑪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 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채권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주기: 분기 1 회 ○ 평가자: 채권운용본부 내 각 팀장 ○ 평가기준: 리서치 20%, 거래능력 50%, 중개사리스크 15%, 중개수수료/기타 15%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그룹 2개사, B그룹 10개사를 선정 - A그룹에 분기약정의 6% 이상, B그룹에 분기약정의 2%~6% 거래 <p>(주식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주기 : 수시 ○ 평가자 : 주식운용본부 운용역 등 ○ 평가기준 : 일반적 재무사항, 거래비용, 리서치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거래 적격 중개회사를 선정한 후, 각 중개회사의 서비스를 건별로 평가 ○ 평가항목 : 종목분석 등 보고서, 기업탐방 주선, 주식 투자관련 세미나, 기타 투자 idea를 제공하는 서비스
장내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및 배점(증권사/선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수행능력 50% / 30% ○ 리서치 20% / 30% ○ 중개수수료율 20% / 30% ○ 기타 서비스 10% /10%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①이 투자신탁의 추가설정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추가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Class C-H 수익증권은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제51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를 위한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에 한해 매입가능합니다.

1) 가입자격 및 세제 혜택등

①이 투자신탁의 C-H 종류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에 한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C-H 종류의 수익자는 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1) 일부 환매

①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①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2)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이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①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등(약관 제36조에 의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포함

한다.)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1. 또는 2.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①, 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증권의 부분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

환매

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①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②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자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③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⑤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 사항

1) 상환금등의 지급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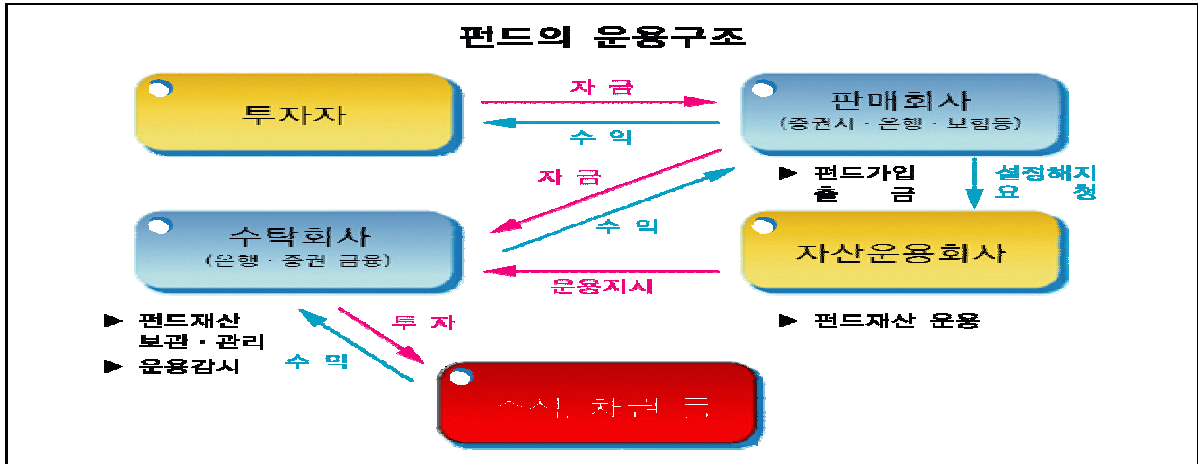
④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17층 02) 780-0300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 주요 업무

- 1) 업무 범위
- 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나.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업무
 - 라. 투자자문 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2) 의무 및 책임

- 가. 자산운용 회사의 의무
-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나. 자산운용 회사의 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기준가격계산 업무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주)우리은행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 3) 업무 위탁**
- ①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 제 176조와 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거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외 국통화표시자산(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한함)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과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단순매매주문업무 등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회사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 ③ 업무위탁에 따른 보수는 약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현재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이며, 약관 제4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는 항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업무위탁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 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산운용회사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해외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비용은 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합니다.

가. 해외위탁자
산운용회사의
개요

상호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회사의 연혁	1982. 12. CSFB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설립 1993. 11. CS First Bos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사명변경 1995. 7. Credit Suiss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사명변경 1996.12.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사명변경 2006. 1. Credit Suisse 그룹 자산운용부문(Division)으로 통합
설립준거법	영국법
대주주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UK) Holding Limited 100% 소유

나. 해외위탁자
산운용회사의
재무내용

(2006.12.31 현재, 단위 : 억원)

총자산	총부채	자본금	당기순이익	운용자산의 규모
553	369	658	-133	715,201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십억원)

구분	2008.03.31	2007.03.31
현금 및 예치금	67.6	62.2
유가증권	0.3	0.6
대출채권	0.9	0.9
유형자산	0.7	0.8
기타자산	17.3	13.0
자산총계	86.8	77.6
예수부채	0.3	0.9
기타부채	11.8	4.3
부채총계	12.0	5.2
자본금	33.3	33.3
자본잉여금	13.7	13.7
이익잉여금	27.8	25.4
자본조정	-	-
자본총계	74.8	72.4
부채와자본총계	86.8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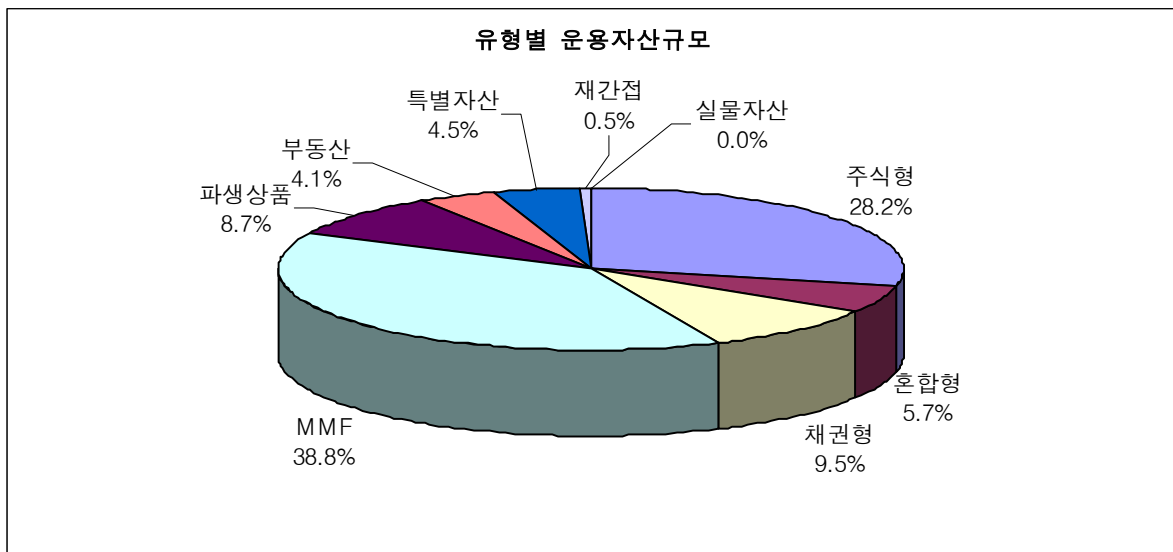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십억원)

구분	2008.03.31	2007.03.31
영업수익	51.7	35.1
영업비용	28.0	16.8
영업이익	23.7	18.2
영업외수익	0.0	0.3
영업외비용	3.6	0.1
경상이익	20.1	18.5
법인세비용	5.8	5.3
당기순이익	14.4	13.2

4. 운용자산 규모

구분	운용규모 (단위 :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합계
2008.11.30	31,823	6,370	10,738	43,737	9,774	4,642	5,103	517	0	112,705



5.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주요경력
김영준	팀장	- 고려대 무역학과/Tuck School of Business (MBA, 다트머스대 학) - 한국 산업은행 국제투자부 - 현대해상화재보험 해외투자팀 - 현,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Global운용팀장
양재규	팀원	-연세대 불어불문학과/연세대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재무 - E1 마케팅 세일즈/LVMH 인사부 - KIMENG Research Assistant - 현,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Global운용팀

주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은 팀제에 의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1. 운용전문
인력의 기타운
용현황

(2008.11.30.기준)

성명	운용구분	운용펀드 수	운용자산(억원)
김영준	공통	14	11,330
양재규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투자일임계약 운용규모 : 없음

5-2. 위탁운용
펀드매니저 현
황

[위탁운용 펀드매니저 소개]

성명	소속부서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Neil Gregson	이머징 마켓주식팀	- 영국 Nottingham Univ.철광산 엔지니어 전공 - 남아프리카공화국 철광산 엔지니어 -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산운용사에서 금광 및 원자재 펀드 운용 - Credit Suisse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주식 최고책임자 - Credit Suisse 자산운용 부문 Emerging Market 주식 최고 책임자

* 상기 운용자는 해외자산운용을 운용한 위탁운용사의 펀드매니저로서 본 펀드의 공식적인 운용사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입니다. 위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연혁
우리은행	(100-792) 서울 중구 회현동 1 가 203 -(02)2002-3000 -http://www.wooribank.com	1899 년 1 월 설립
우리투자증권	(150-7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02)768-7000 -http://www.wooriwm.com	1969 년 1 월 설립
경남은행	(630-010)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055)290-8000 -http://www.knbank.co.kr	1970 년 5 월 설립
광주은행	(501-730) 광주 동구 대인동 7-12 -(062)239-5000 -http://www.kjbank.com	1968 년 7 월 설립
부산은행	(601-060) 부산 동구 범일 2 동 830-38 -(051)642-3300 -http://www.pusanbank.co.kr	1967 년 10 월 설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38-730)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02)2240-2114 -http://www.suhyup.co.kr	1962 년 4 월 설립
전북은행	(561-71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063)250-7114 -http://www.jbbank.co.kr	1969 년 12 월 설립
하나은행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1 가 101-1 -(02)2002-1111 -http://www.hanabank.com	1959 년 12 월 설립
한국외환은행	(100-793)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 181 -(02)729-8000 -http://www.keb.co.kr	1967 년 1 월 설립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 가 25 HSBC 빌딩 -(02)2004-0000 -http://www.kr.hsbc.com	1984 년 12 월 설립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20-70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222 -(02)3779-3000 -http://www.bridgefn.com	1954 년 8 월 설립
굿모닝신한증권	(150-7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1600-0119 -http://www.goodi.com	1973 년 4 월 설립
대신증권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769-2000 -http://www.daishin.co.kr	1962 년 7 월 설립
동부증권	(150-88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02)369-3000 -http://www.winnet.co.kr	1982 년 12 월 설립
리딩투자증권	(100-0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02)2009-7000 -http://www.leadingkorea.com	2000 년 3 월 설립
메리츠증권	(150-87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02)785-6611 -http://www.imeritz.com	1973 년 3 월 설립
삼성증권	(110-789)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 6 종로타워 -(02)2020-8000	1982 년 10 월 설립

	-http://www.samsungfn.com	
신영증권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2)2004-9000 -http://www.shinyoung.com	1956년 2월 설립
아이엔지증권중개	(135-984)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7 강남 파이낸스센터 13층 -(02)2186-8000	2008년 6월 설립
유진투자증권	(150-7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02)368-6000 -http://www.eugenefn.com	1954년 5월 설립
이트레이드증권	(150-88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 빌딩 8층 -(02)3779-0120 -http://www.etrade.co.kr	1999년 12월 설립
키움증권	(150-73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02)3787-5000 -http://www.kiwoom.com	2000년 1월 설립
하나대투증권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02)3771-7114 -http://www.hanadaetoo.com	1977년 2월 설립
한국투자증권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02)3276-5000 -http://www.truefriend.com	1974년 9월 설립
한양증권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02)3770-5000 -http://www.hygood.co.kr	1956년 3월 설립
현대증권	(150-7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02)768-0114 -http://www.youfirst.co.kr	1962년 6월 설립
하이투자증권	(150-87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02)318-9111 -http://www.hi-ib.com	1989년 11월 설립
HMC 투자증권	(150-7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02)3787-2114 -http://www.hmcib.com	1955년 7월 설립
IBK 투자증권	(150-758)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6915-5000 -http://www.ibks.com	2008년 5월 설립
NH 투자증권	(150-74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02)2004-4114 -http://www.nhis.co.kr	1982년 11월 설립
SK 증권	(150-73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02)3773-8245 -http://www.priden.com	1955년 7월 설립
교보생명보험	(110-714)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1 교보생명빌딩 -(02)721-2121 -http://www.kyobo.co.kr	1958년 6월 설립
대한생명보험	(150-76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 빌딩 -(02)6386-5555 - http://www.korealife.com	1946년 9월 설립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35-716)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141 성원빌딩 -(02)3469-9600 -http://www.metlifekorea.co.kr	1989년 6월 설립
삼성생명보험	(100-716)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1588-3114 -http://www.samsunglife.com	1957년 5월 설립

2. 주요업무

1) 판매회사의 업무 범위

- 가.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나. 수익증권 환매업무
- 다. 수익증권 교부업무
- 라.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마.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바.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매행위준칙등

- ① 판매회사 및 판매 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나.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다.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라.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마.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다음의 행위
 -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 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 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판매회사가 금전의 대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금전의 대여를 조건으로 간접투

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게 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게 하는 행위
 -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간접투자기구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전(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직원이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고유재산의 운용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 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주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 빌딩
전화번호	(02)2004-0000
영업점포현황	1 개
홈페이지	http://www.kr.hsbc.com

2. 주요 업
무

1) 업무 범위

-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1. 약관 제36조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표시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2) 의무 및
책임

가. 수탁회사의
의 의무

- ①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수탁회사의 책임**
- ①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 서비스(주)
	주소	(150-73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전화번호	(02)3771-9800
	연혁	2000.03 설립

2. 주요 업무

- 1) 업무 범위
- 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을 평가
 - 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다. 산정된 기준가격의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 라.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책임**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V. 채권평가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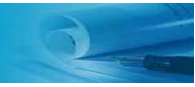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채권평가	(110-7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http://www.koreabp.com
나이스채권평가	(150-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02)398-3900 -http://www.npricing.co.kr/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215-1400 -http://www.bond.co.kr/

2. 주요 업
무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 가.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 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다.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수탁회사의 변경
- ③ 신탁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⑦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⑧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⑨ 투자신탁의 해지
- ⑩ 투자신탁의 합병

2) 의결권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증권에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결 방법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①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1) 자산운용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2) 회계감사인인 손해배상책임**
- 회계감사인인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http://www.amak.or.kr>), 우리카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인터넷 (<http://www.wcsa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2) **사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기간 종료
 - 나.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 다. 투자신탁의 해지
- 3)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인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기준가격계산서
 -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4) **자산운용보고서**
- ①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 **수탁회사보고서**
- ① 수탁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수탁회사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수탁회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탁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 1)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 ①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나.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http://www.wcsam.com>)·판매회사(판매회사 개요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라.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마. 이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아.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의결권 행사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펀드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 년 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펀드명 : 우리카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투자신탁 제1호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